

합 의 서

가해자와 피해자간의 (금전대여 사기고소)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원만히합의합니다.

아 래

- 1. 가해자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금〇〇〇원을 20〇〇. 〇. 〇.까지 변제한다.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〇〇. 〇. 〇.부터 다 변제할 때까지 연 20%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.
- 2. 피해자는 위 합의서를 교부받고 위 사건 고소를 직접 취하하거나 고소취하 인 감증명서를 가해자에게 교부하기로 한다.
- 3. 가해자가 합의서를 교부한 날부터 ○일 이내에 위와 같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합의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.

2000. 0. 0.

가 해 자 ○ ○ ○ (인)

피해자 △ △ △ (인)